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8
----------	-----

2018. 4. 5. (목)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숙애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2018년 3월 14일

다. 회부일자: 2018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2018년 3월 27일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숙애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에 지역서점을 추가하여 학교도서관협력체계망을 확대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현행: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

○ 정의규정 신설

-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안 제2조 제4항)
- “학교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안 제2조제4항)
- “교육전문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 공무원(안 제2조제5항)

○ 협력체구축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서점을 추가하여 조문 수정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광주)

-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에 지역 서점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확대 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 최근 대형서점과 온라인 매장 등으로 인하여 지역서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학교도서관

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통하여 지역서점들의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사료됨.

○ 또한 조례명을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로 변경한 것은 조례의 소속기관과 조례 내용의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 간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교도서관의”를 “학교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2. “전담인력”이란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4. “학교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
5. “교육전문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의 장” 을 “학교장”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학교의 장” 을 각각 “학교장” 으로, 같은 항 중 “자료 및 도서구입비” 를 “자료구입비” 로 한다.

제8조 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를 “진흥을” 로, “학교도서관과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홈페이지 연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등” 을 “지방자치단체, 지역서점 및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u>학교도서관의</u>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을 말한다. ② “전담인력”이란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u>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u> 제1조(목적) ----- ----- - <u>학교도서관</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2. “전담인력”이란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② (생략)

③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 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을 토대로 각급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4. “학교장”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5. “교육전문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자치단
체-----

-----.

제4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

-----.

제6조(시설·자료 등) ① -----

----- 학교장-----

-----.

②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 및 도서구입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도서관과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홈페이지 연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장-----

---- 자료구입비-----
-----.

제8조(협력체계 구축) -----
----- 진흥을 -----
-----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지역서점 및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

-----.

관 계 법 령

□ 학교도서관진흥법 (약칭: 학교도서관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1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제 11310 호(도서관법), 2016.12.20]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관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서교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실기교사”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협력망의 구축·운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0호, 2016.2.3., 일부개정]

제6조(사서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 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②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2.17.]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3호, 2017.3.21., 일부개정]

제21조 (교원의 자격)

-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전문개정 2012.3.21]